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23.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개 발 이 익 환 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7.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
	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
	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
	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
	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u>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u>
	업: 1천제곱미터 이상
	<u>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u>
	<u>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u>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u>이상</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3